

## 울산광역시 중구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

(문희성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136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23. 8. 25.

발의자 : 문희성, 박경흠, 이명녀,  
김도운, 홍영진, 김태욱,  
안영호, 문기호, 강혜순,  
정재환

### 1. 제정이유

울산광역시 중구 내 아이돌봄이 필요한 맞벌이·한부모 가정 등에 아이돌보미 서비스 제공을 하여 아이의 복지증진 및 보호자의 일·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을 조성하고자 함

### 2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규정(안 제1조 및 제2조)
- 나. 구청장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정(안 제3조 및 제4조)
- 다. 지원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, 아이돌보미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 규정(안 제5조 ~ 제7조)
- 라. 위탁, 지도·점검 및 포상에 관한 사항 규정(안 제8조 ~ 제10조)

### 3. 제정조례안: 따로 붙임

### 4. 관계법령

- 가. 「아이돌봄 지원법」 제4조 및 제20조
- 나. 「건강가정기본법」 제22조 및 제25조

### 5. 참고사항

- 가. 조례안 예고: 2023. 8. 14. ~ 8. 22.(9일간) / 의견없음
- 나.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: 따로 붙임

## 울산광역시 중구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아이돌봄 지원법」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 내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증진과 보호자의 일·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 및 양육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아이”란 울산광역시 중구에 거주하는 「아이돌봄 지원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.
2. “아이돌봄”이란 아이가 주거지 등에서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제공되는 안전한 보호·양육 등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.
3. “아이돌보미”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아이돌보미를 말한다.

제3조(구청장의 책무) ① 울산광역시 중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아이돌봄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, 돌보는 아이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아이돌봄을 지원하여야 한다.

- ② 제1항에 따른 아이돌봄 지원은 보호자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제공되어야 한다.

제4조(다른 조례와의 관계) 아이돌봄을 위한 정책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5조(지원계획) 구청장은 아이돌봄 지원을 효율적인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울산광역시 중구 아이돌봄 지원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1. 아이돌봄 지원을 위한 정책목표 및 기반구축에 관한 사항
2. 아이돌봄 지원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비용지원에 관한 사항
3. 아이돌봄 지원사업의 활성화 방안
4. 아이돌보미의 처우 개선에 관한 사항

5. 그 밖에 구청장이 아이돌봄 정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6조(지원사업 등) ① 구청장은 아이돌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1. 아이돌봄서비스의 비용지원
2. 아이돌보미 사업
3. 아이돌보미의 처우개선 사업
4. 아이돌봄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
5. 그 밖에 아이돌봄 지원사업을 위해 필요한 사항

②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 및 법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제7조(아이돌보미의 처우개선) ① 구청장은 아이돌보미의 처우가 유사 돌봄서비스 종사자의 평균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구청장은 아이돌보미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제8조(위탁)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아이돌봄 지원을 위하여 사업의 일부를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지원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「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를 준용한다.

제9조(지도·점검) 구청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돌봄서비스의 운영, 시설 및 설비기준, 안전사고 예방, 종사자 관리, 재정관리 상태 등을 지도·점검하게 할 수 있다.

제10조(포상) 구청장은 아이돌봄 지원 및 활성화에 공로가 있는 개인, 단체 등에 대하여 「울산광역시 중구 포상 조례」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관 련 법 령

### □ 「아이돌봄 지원법」

제4조(국가 등의 지원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가 아이돌봄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.

제20조(비용의 지원 등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일정소득 이하 가구의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은 가구의 소득수준과 거주 지역 및 부모의 취업 등을 고려하여 차등지원할 수 있다.

③ 아이돌봄서비스의 비용은 서비스의 종류, 해당 지역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

### □ 「건강가정기본법」

제22조(자녀양육지원의 강화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에 대하여 자녀양육으로 인한 부담을 완화하고 아동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육, 방과후 서비스, 양성이 평등한 육아휴직제 등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확대 시행하여야 한다.

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양한 가족형태를 고려하여 아동양육지원사업 시책(아이돌보미 서비스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양육지원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사노동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이를 관련 법·제도 및 가족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**제25조(가족부양의 지원)**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영·유아 혹은 노인 등 부양지원을 요하는 가족구성원이 있는 가정에 대하여 부양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.

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질환이나 장애로 가족내 수발을 요하는 가족구성원이 있는 가정을 적극 지원하며, 보호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전문보호시설을 확대하여야 한다.

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족구성원중 장기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이나 사고로 간병을 요할 경우 가족간호를 위한 휴가 등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
## 울산광역시 중구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(안)

###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#### 1. 미첨부 근거규정

- 「울산광역시 중구 조례 등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2항제2호

<b>「울산광역시 중구 조례 등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</b>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제3조(작성대상) ① 비용추계는 조례 등의 시행에 따라 의무적·임시적으로 발생하는 비용과 시행규칙 등 하위규정의 시행에 따라 발생이 예상되는 비용까지 포함하여 실시한다.

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자료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.

1.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

**2.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이미 시행된 조례 등과 중복되거나 이미 시행되어 그 비용이 공개 또는 증명된 경우**

3. 비용추계 대상이 보안을 요하는 국가안전보장, 군사기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수 없는 경우

4. 조례 등의 내용이 선언적, 권고적인 형식 등으로 규정되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#### 2. 미첨부 사유

- 동 조례안은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이미 시행된 조례 등과 중복되거나 이미 시행되어 그 비용이 공개 또는 증명된 경우로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함

- 「아이돌봄 지원법」에 근거하여 “아이돌봄 지원사업” 예산 반영 및 시행중

#### 3. 작성자

- 소 속: 가족복지과
- 직 급: 지방행정주사
- 이 름: 윤선정
- 연락처: 052-290-4931